

#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보조계량기 설치대상 확대

공운식 \_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관내에서는 업종이 상이한 업체가 한 건물에 있을 경우에만 보조계량기 설치를 승인해 왔다. 그러다 보니 상수도 사용료를 환산할 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관내의 행정 구역

**시간적 범위** | 2002년 12월 30일 ~ 2004년 7월 30일

**연구 대상** | 보조계량기 설치 대상 확대 적용에 따른 급수 서비스 향상 및 지방 재정 확충 기여도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 전·후 비교

### 조례 개정 전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사용료에 대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례 개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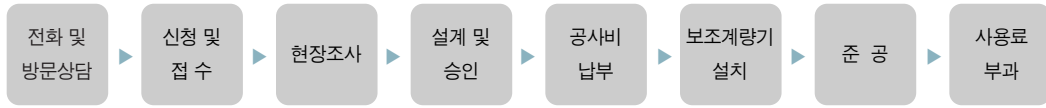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1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와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또는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급수 배관이 분리 설치된 주택의 수도 사용자 등이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로써 과도한 사용료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계량기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인 간의 사용료 환산에 따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보조계량기 설치

### 목적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를 단일 계량기로 계량하면서 발생하는 사용료 환산에 따른 사인 간의 분쟁 해소

## 설치 절차



## 설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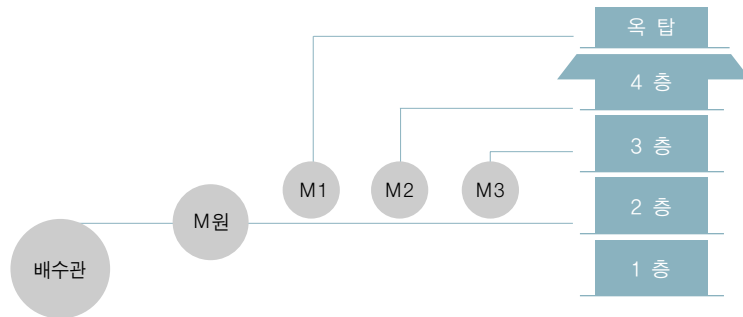
(단위 : 원)

구경(mm)	계	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	비고
13	455,080	58,080	379,000	18,000	내부 분리배관 비용은 수용가에서 별도 부담
20	1,177,930	75,930	1,084,000	18,000	
25	1,747,570	75,570	1,654,000	18,000	

## 설치 방법

원계량기 후의 내부 배관에서 분기하여 검침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 내부로 인입되는 배관이 수용가별로 분리되도록 시공

보조계량기 설치 시공도



## 보조계량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

신축 현장에서는 건축물 구축과 함께 내부 배관을 각 수용가별로 분리 시공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건축물은 분리 배관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보조계량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 대책

우리 사업소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사용료 환산에 따른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급수공사 업무 추진 또는 관내 순찰 시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 및 현장소장에게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을 알려주어 내부 배관을 분리 시공하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효과 분석

### 조례 개정 후 보조계량기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수입	지출	수익	비고
계	183	71,457	11,778	59,679	
2004년	49	25,988	3,057	22,931	2004년 7월 30일까지
2003년	134	45,469	8,721	36,748	

## 단일 업종에 설치된 보조계량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주 택				기 타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계	50	15,894	3,206	12,688	8	2,529	513	2,016	42	13,365	2,693	10,672
2004	11	3,565	705	2,860	-	-	-	-	11	3,565	705	2,860
2003	39	12,329	2,501	9,828	8	2,529	513	2,016	31	9,800	1,988	7,812

### 보조계량기 설치에 따른 분쟁 해소 사례

#### [사례 1] 상가주택의 경우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70-20번지

건축물 규모 : 2층 건물 (1층 점포 2, 2층 주택 1)

계량기 설치 : 3전 (원계량기 20mm 1전, 보조계량기 13mm 2전)

내용 : 2층 주택에 거주하는 건축주 A씨는 2001년 10월에 원계량기를 설치하고 높은 업종인 영업용을 적용받아 다음해인 2002년 3월에 상가용으로 보조계량기 1전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과도한 요금 부담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 사이에 사용료 환산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에 사업소를 방문하여 보조계량기 1전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의 급수조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여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02년 12월 30일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주로부터 보조계량기 설치를 신청받아 상가용으로 보조계량기 1전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료 환산에 따른 사인 간의 분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현황 사진



보조계량기 - 상가 2

보조계량기 - 상가 1

원 계량기 - 주택용

#### [사례 2]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76-7번지

건축물 규모 : 3층 건물 (1층 4가구, 2층 3가구, 3층 1가구)

계량기 설치 : 8전 (원계량기 25mm 1전, 보조계량기 13mm 7전)

내용 : 건축주는 2001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전기 및 도시가스는 각 호별로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여 분리 배관을 하였으나, 상수도는 계량기 1전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통합 배관하여 원계량기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건축물을 준공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는 임차인들로부터 사용료 환산에 따른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건축주는 이를 해소하고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의 급수조례에서는 보조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여 건축주 및 거주자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급수조례가 개정되어 현재는 각 호별로 보조계량기 7전을 설치하여 분쟁이 해소되었다.

현황 사진



보조계량기 7전

원 계량기 1전

분석 결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 후 183전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급수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단일 업종으로 보조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50개소에 대하여 조례 개정 후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15,894천원을 징수하여 12,688천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론

다수의 시민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밖으로는 시민에게 한층 더 향상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안으로는 수입원을 확대하여 공기업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

【참고자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2항 및 3항, 제27조 2항

## 미국물환경연합(WEF) 정기회의 및 전시회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하수도부문의 선진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매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물환경연합(WEF) 정기회의 및 전시회에 참관단을 모집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미국물환경연합 정기회의 및 전시회는 하수도 관련 전시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 중 하나로, 국제적인 하수도 관련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선진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참관일정** : 2005년 10월 26일 ~ 11월 4일 (예정)
2. **개최장소** : 미국 워싱턴 D.C
3. **참관일정 및 비용** : 미정

교육  
훈련

정보

행사

시험

www.kwwa.or.kr

물은 생명 그리고 미래입니다

☎ 문의처 : 기술지원처 연구개발팀 최성현 (직통전화 : 02-3156-7753)

※ 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및 신청 공문으로 공지 예정이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요망